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